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2021. 3. 12.(금)
제38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남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3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도내에서 20년 이상 기업 활동을 영위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우수 장수기업 선정 근거 마련

○ 관련법령 및 관련기관명 개정·변경사항 반영

4. 주요내용

○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장수기업 선정 및 예우 할 수 있도록 규정
(안 제4조, 안 제8조)

○ 관련법령 및 관련기관명 개정·변경사항 반영(안 제4조, 안 제5조)
"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"을 "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"으로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6조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로 변경함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○ 도내에서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**유망 장수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** 필요

○ 우수 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축적된 역량이 지역경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**지원 기반 구축 필요**

나. 주요 검토내용

○ 안 제4조, 안 제8조에서는 우수 장수기업 선정 및 예우 규정을 두었으며, **'우수 장수기업'은 충청북도에 20년 이상**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**기업**으로 정하였음

☞ 2018년 기준 중소기업 **평균업력(제조업기준)이 12.2년에 불과**한 것에 비춰볼 때 **장수기업 선정기준을 20년 이상**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※ 선정대상 기준(20년 업력)
- **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업력(제조업기준)은 12.2년에 불과**
  10년미만 48.2% / 10년이상~20년미만 35% / 20년이상~30년미만 12.3% / 30년이상 4.5%

○ 안 제4조, 안 제5조는 관련법령 및 관련기관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
"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"을 "충북지방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"으로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6조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로 변경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**우수 장수기업 선정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** 및 **일부 보완사항을 정비**하는 것으로

○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예우 및 지원을 위한 **조례의 목적에 부합**하고 **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**됨

○ 다만, 운영에 있어 우수 장수기업 선정 및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